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8. 11 선고 2019가단3627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오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혜민

피고(선정당사자) B중천회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0. 6. 23.

판 결 선 고 2020. 8. 1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(선정당사자)는 삼척시 D 임야 31,736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9. 7. 18. 접수 제7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선정자 E, F, G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. 6. 30. 접수 제549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(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택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삼척시 D 임야 31,736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에 관하여, 1971. 6. 30. H 앞으로
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2111호, 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한
소유권보존등기(이하 ‘이 사건 보존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고, 이후 2019. 7. 18. 피고(선정당사자)
앞으로 2019. 7. 15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이전등기’라
한다)가 마쳐졌다.

나.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임야조사서가 존재하지는 않고, 다만 1924년(대정 13년)경 강원
삼척군 I 임야에 대하여 작성된 임야사정공시부가 존재할 뿐인데, 위 임야사정공시부상 이 사건
임야의 소유자 란에는 ‘J1), K2)’으로, 비고 란에는 ‘J 문중’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. 한편, 이 사건
보존등기에 앞서 1970. 11. 1. 복구됐던 이 사건 임야의 폐쇄임야대장에는 복구 당시의 소유자가 ‘K
외 1인’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(이러 특별조치법에 의해 ‘H’ 명의로 소유자변경 및 소유권보존의
등재가 이뤄진다).

다. H는 2019. 11. 23. 사망하였고, 그에 따라 아내인 선정자 E, 자녀인 선정자 F, G이 공동으로
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 한편, 원고의 부 L는 2017. 7. 3. 사망하였고, 그에 따라 아내인 M과 자녀인
원고 등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, 4, 5, 9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
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5대조인 망 P의 소유였다가 원고의 조부 망 O, 원고의 부 망 L를 거쳐
원고 등에게까지 순차로 상속된 토지로서, 최근에야 급조된 피고(선정당사자)가 망 H에게 명의신탁한
토지가 아니며,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5대조로부터 조부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묘소가

조성되어 있기까지 한 바, 망 H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고,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(선정당사자)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,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1)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2111호, 실효)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, 실효)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,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,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).

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,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,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25296 판결,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망 H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원고 주장처럼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그 허위작성 여부의 판단대상이 될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전혀 현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, 갑 제3호증의 기재,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,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등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반하는 듯한 임야사정공시부가 존재할 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부 등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갑 제3,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)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[피고(선정당사자)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완수

선정자명단

1. B종친회
2. E
3. F
4. G. 끝.

1) 1974. 1. 10. 사망, 그의 아들이 이 사건 보존등기 명의자인 H, 손자가 선정자 F, G이다.

2) 1924. 7. 3. 사망, 그의 아들이 N, 손자가 O, 증손자가 L, 고손자가 원고이다.

